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
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13. 5. 2.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년 4월 16일
- 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2013년 4월 25일
- 라. 상정일자 : 제174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13년 4월 29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 : 복지국장 김찬재)

가. 제안이유

-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수료부과를 현 상거래 실태에 맞게 수수료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
나. 주요내용

-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조정하여 시행하고자 함.(제9조제2항 안 별표 2)

구 분	단독주택(ℓ 당)		공동주택(kg당)	
	변경 전	변경 후	변경 전	변경 후
수 수 료	61원	60원	76원	75원
주민부담율	65%	64%	65%	64%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태선)

-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1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라 수수료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- 주요내용을 보면
단독주택 수수료를 ℓ 당 61원에서 60원으로 하고 공동주택 수수료를 kg당 76원에서 75원으로 조정하여 시행하고자 함.
- 「폐기물관리법」 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앞서 관련 수수료를 거래의 현실화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려는 것으로 수수료 조정으로 인한 주민부담을 또한 감소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95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3. 4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6월1일 시행예정인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수료를 현 상거래 실태에 맞게 현실화하여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조정

- 수수료 납부편의를 위해 원단위 과금체계를 현실화
- 변경내역

구 분	단독주택(ℓ 당)	공동주택(kg당)
수 수 료	61원 ➡ 60원	76원 ➡ 75원
주민부담율	65% ➡ 64%	65% ➡ 64%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폐기물관리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합 의 :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 : 생략

※ 근거 :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4호
(입법이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)

(2) 규제심사 : 대상사무 없음

(3) 부패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
(4) 성별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
붙임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
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별표2〉

음식물류 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수수료 부과기준
(제9조제2항 관련)

구 분	단위	수수료	수집·운반비	처리비	비 고
부피형 종량제	1ℓ	60원	수집·운반비와 처리비는 대행업체와의 별도 계약으로 정한다.		※ 판매수수료 : 수수료(가격)에 포함
	2ℓ	120원			
	3ℓ	180원			
	5ℓ	300원			
	10ℓ	600원			
	20ℓ	1,200원			
	100ℓ	6,000원			
무게형 종량제	kg당	75원			※ 김장철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시기에 는 20ℓ, 100ℓ의 부피 형 종량제 봉투 사용가능
일반음식업소 및 상가 (다량배출사업장 제외)	kg당	114원			
다량배출사업장	별도 계약으로 정함	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			개 정 안					
<별표2>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수수료 부과기준 (제9조제2항 관련)						<별표2>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수수료 부과기준 (제9조제2항 관련)					
구분	단위	수수료	수집·운반비	처리비	비 고	구분	단위	수수료	수집·운반비	처리비	비 고
부피형 종량제	1ℓ	61원	수집·운반비와 처리비는 대량채취의 별도 계약으로 정한다.	※ 판매수수료 :수수료(가격) 에 포함		부피형 종량제	1ℓ	60원	수집·운반비와 처리비는 대량채취의 별도 계약으로 정한다.	※ 판매수수료 :수수료(가격) 에 포함	
	2ℓ	122원					2ℓ	120원			
	3ℓ	183원					3ℓ	180원			
	5ℓ	305원					5ℓ	300원			
	10ℓ	610원					10ℓ	600원			
	20ℓ	1,220원					20ℓ	1,200원			
	100ℓ	6,100원					100ℓ	6,000원			
무게형 종량제	kg 당	76원	수집·운반비와 처리비는 대량채취의 별도 계약으로 정한다.	※ 감장철 등 음식물류폐기물 다량채취 시에는 20ℓ, 100ℓ 의 부피형 종량 제 봉투 사용가 능		무게형 종량제	kg 당	75원	수집·운반비와 처리비는 대량채취의 별도 계약으로 정한다.	※ 감장철 등 음식물류폐기물 다량채취 시에는 20ℓ, 100ℓ 의 부피형 종량 제 봉투 사용가 능	
일반음 식업소 및 상가 (다량배 출사업 장 제외)	kg 당	114원		일반음 식업소 및 상가 (다량배 출사업 장 제외)		kg 당	114원				
다량배 출사업 장	별도 계약으로 정함					다량배 출사업 장	별도 계약으로 정함				